

산림법 및 임업진흥촉진법 국회통과

- '96. 4. 27. 입법예고 후 '96. 11. 5. 국무회의를 거쳐 '96. 11. 15. 국회에 제출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과
- '95. 9. 2. 입법예고 후 '96. 10. 15. 국무회의를 거쳐 '96. 10. 24. 국회에 제출한 임업진흥촉진법안이 '97. 3. 17. 제183회 임시국회(본회)를 통과했다.

<산림법 개정>

◎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 행정규제를 완화·폐지하여 국민 속의 산림행정구현을 위하여
 - 임산물 반출시 생산확인용 견인찍기 및 생산확인표부착 제도 폐지
 - 임야매매증명발급제도 폐지
 -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허가→채석신고
-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 도입 확대를 위하여
 - 국유림 대부대상에 종축업 추가
 - 분수림설정 대상을 조림·과수에서 관상 수재배까지 확대
 - 산림형질변경지 중 타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경우 복구 의무 면제
- 매년 증가하는 산불의 다발화·대형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산불예방행동지침 및 산불관리통합지침 제정
 -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 및 화

기·인화물질 소지자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법령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 임산물의 이동금지명령 근거 마련
 - 토사채취허가의 제한 근거 마련
 - 산림형질변경지 적지복구설계서 작성·승인 근거 마련
 - 채석단지 지정해제기준을 구체화한 것 등이다.

◎ 주요조문별로 살펴보면

(1) 산림의 이용구분조사

제16조의2(산림의 이용구분조사) ① 산림의 이용구분을 위하여 10년마다 산림이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필요한 시기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신설 배경>

- 현재 10년마다 산림이용구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나 부실초지가 산림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전환된 산림에 대한 이용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림소유자가 해당 산림을 이용·개발하려 하여도 법적 근거

가 없어 이용·개발할 수가 없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기적인 산림이용구분조사 시기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 대체조림비의 감면 및 환급근거

제20조의2(대체조림비)	①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하는 자는 산림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사업 및 농어가주택건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체조림비를 납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1.	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2.	전용허가 또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사업계획변경으로 대체조림비 부과대상 면적이 감소된 경우.
4.	납입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신설배경〉

○ 현행 산림법에 대체조림비 「전액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 50% 감액하도록 경감규정을 두었다.

○ 또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사업 및 농어가주택건축 등 대표적인 면제대상사업을 법에 근거를 두고(상위법령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 대체조림비의 환급규정 마련

- 전용허가(법 §18) 전에 미리 대체조림비를 납부하고 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당초 면적 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대체조림비의 차액을 환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 전용부담금 환급도 대체조림비 환급규정을 준용.

(3) 보안림내 관리사 설치

제57조(보안림의 지정해제)	시·도지사 또는 지방
------------------------	-------------

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6.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의 경우 10헥타르 이상, 기타 보안림의 경우 3헥타르 이상을 8년 이상 소유한 산림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할 때.〈신설〉

〈신설배경〉

○ 보안림지정으로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산주의 보상적 차원에서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사시설을 허용하는 한편

○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산림을 산주가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4) 관상수 분수림설정

제88조의2(분수림설정)	산림청장은 조림 또는 농업인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과수재배 또는 관상수생산을 목적으로 국유림에 분수림을 설정 할 수 있다.
----------------------	--

〈신설배경〉

○ 국유림의 분수림설정대상을 조림·과수재배 목적에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 및 임업인의 단기소득목적을 위한 국유림 활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으므로 설정대상에 관상수를 추가하여 소득증대에 기여도록 했다.

(5)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제90조(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	---

6.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자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7.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토석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 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 안의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을 받은 구역
- 나. 제90조의2 제2항 또는 제9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구역
- 다. 제90조의6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구역

〈신설배경〉

○ 산림 안에서 채석허가·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석매각을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 입목벌채와 형질변경이 불가피하게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법규상으로는 입목벌채허가 및 형질변경허가를 다시 받는 것을 채석허가·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석매각을 받으면 입목벌채와 형질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 허가나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 산림형질변경허가·신고→입목벌채와 임산물굴취·채취 가능
- 국유림토석매각·무상양여, 채석허가·신고, 토사채취허가·신고→입목벌채 산림형질변경, 임산물굴취·채취 가능

(6) 허가나 신고없이 채석이 가능한 경우

제90조의2(채석허가 등) 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채석할 수 있다.
〈신설〉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 안에서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을 받은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2.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기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농림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굴취·채취한 석재를 건축용 또는 석공예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구역 안에서 광물의 채광·선광 작업의 경우외에 석재를 쇄골재로 가공하는 경우.

다. 제90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0조의6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사채취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신설배경〉

○ 건물신축, 부지정리 등 산림을 형질변경할 때 석재가 불가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법규상 채석허가를 얻어야 석재를 채취·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 행정절차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다만, 악용 사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채석허가를 받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 건축용 또는 석공예용으로 사용·판매하는 경우.

- 산림형질변경허가지 내에서 쇄골재로 가공하는 경우.

- 광물(장석·규석)을 쇄골재로 가공·판매하는 경우.

(7) 채석단지 안에서의 채석신고

제90조의5(채석단지 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채석단지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제90조의2 제1항 및 제90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 ② 채석신고의 경우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채석량을 기준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신고한 기간으로 하되, 산림소유자의자의 경우에는 그 산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할 수 없다.〈신설〉
- ③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당시 채석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석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석허가기간은 신고한 채석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 ④ 제90조의2 제8항, 제90조의4 제1항·제6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채석신고에 따른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기간의 연장, 채석장의 산림재해 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신고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감독과 신고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예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신설배경〉

○ 현행 채석단지 안에서는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앞으로 채석단지를 지정할 때 현지조사와 채석 타당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채석단지로 지정하고 채석신고로 채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내용〉

- 채석신고의 경우,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채석량을 기준으로 결정
- 채석단지의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채석신고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
- 채석허가에서와 같이 복구기간연장, 채석장의 산림재해 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명령 등을 준용하여 철저한 채석단지관리로 국토경관훼손 최소화

(8) 토사채취허가 등

제90조의6(토사채취허가 등) ① 산림 안에서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토석 중 석재를 제외한 토석 (이하 '토사'라 한다)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없이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있다.〈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③ 누구든지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주민생활의 안전 기타 공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토사를 굴취·채취할 수 없다.〈신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토사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90조의2 제3항·제8항·제9항, 제90조의4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91조의 규정은 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의 기간, 토사채취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토사채취, 토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지역의 산림재해 등의 발생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토사채취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도·감독과 토사채취에 따라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비용예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개정배경 및 내용〉

○ 토사채취허가는 별도 조항이 없이,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굴취·채취허가에 포함시켜 처리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임산물굴취·채취허가와 토사채취허가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산물굴취·채취허가와 별도로 토사채취허가 조항을 신설하여 토사채취에 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복구비예치, 지도·감독 등 현행 시행령·시행규칙상에 규정된 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9) 생산확인용검인찍기 및 생산확인표첨부 제도 폐지

제92조(임산물반출) ①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확인용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면 반출할 수 없다.

〈폐지배경〉

○ 그동안 사회 여건 변동으로 도·남벌이 매년 줄어들어 영리목적의 도·남벌은 거의 근절된 실정으로 현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생산비 절감, 산림소유자의 자율성 보장, 임산물 공급 원활, 행정간소화 등을 위하여 생산확인용검인찍기 및 생산확인표첨부 제도를 폐지했다.

(10)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등

제100조의3(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행락객 등 입산자가 많은 산림에 대하여 산지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신설〉

②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지정화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산지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③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신설배경〉

○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에 대한 처벌이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에서 전산림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락객 등 입산자가 많은 산림에 대하여 산지오염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산지정화보호구역 지정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 지역을 특별관리토록 했다.

(11) 산불예방·진화 등의 조치

제102조의2(산불예방·진화 등의 조치) ① 산림청장은 기상상태에 따라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상상태별 산불예방행동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 및 산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불관리통합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산불진화요원 기타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자 및 산불의 예방·진화 및 피해복구에 관계되는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불관리통합지침에 따라 산불의 예방·진화 및 피해복구를 하여야 한다.

〈신설배경〉

○ 산림내에 낙엽 등 가연물질이 많이 쌓이고 등산·행락인구 증가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농산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진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발생을 줄이고 산불발생시 조기발견·조기신고로 초동진화에 대처하고자 산불에 대한 기상상태별 국민행동요령을 제정하고

○ 특히 최근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대형화 추세에 있어 관련 기관, 부처간의 공조체제확립, 진화체계의 개선, 진화조직 및 장비확보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산불관리통합지침'을 제정토록 했다.

(12) 임야매매증명제도 폐지

제111조(임야의 매매) ① 산림을 경영하거나 산림경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폐지배경〉

○ 임야매매증명제도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임야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림법을 개정 '90. 7. 14부터 시행하여왔으나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국토이용관리법과 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 토지거래신고구역 안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신고를 한 경우 임야매매증명과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 특히 토지실명제 실시로 토지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이 제도를 폐지했다.

(13) 공동연구개발 및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제114조의3(공동연구개발) ① 산림청장은 영림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기술 또는 특정목적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학·산업체 등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연구기관 및 신청인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기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4(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산림청장은 소속 연구기관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③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 전이라도 당해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신설〉

〈신설배경〉

○ 산업체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공동개발한 성과를 사용할 경우,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 연구개발 의욕 제고 및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참여 공무원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

❸ 특히, 이번 산림법 개정으로 벌칙을 강화한 내용

(1) 벌금조정

- 7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벌금 → 2천만 원(§116)
 - 산림절도 죄
- 5년 이하 징역 · 700만 원 벌금 → 1천500만 원(§118)
 -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을 벌채한 자
 -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 설치자
 - 허가없이 보전임지를 전용한 자
 - 보안림내에서 입목벌채 등을 한 자
 - 입목 등의 인장을 삭제한 자
 - 입목을 손상 · 고사하게 한 자
- 3년 이하 금고 · 500만 원 벌금 → 1천만 원(§120)
 - 산림실화 죄
- 3년 이하 금고 · 500만 원 벌금 → 1천만 원(§120)
 - 승인없이 전용산림을 용도 변경한 자
 - 신고없이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한 자
 - 채석장위해방지 등의 명령 위반자(100만 원)
- 200만 원 이하 벌금(§122 ①)
 - 불량임산물의 판매금지 등 명령위반자(100만 원)
 - 채석허가 목적에 위반하여 채석한 자(100만 원)
 - 채석허가 관련된 사후관리 등의 감독 위반자(100만 원)
 - 해충구제 · 예방명령 위반자(20만 원)
- 100만 원 이하 벌금(§122 ②)
 - 등록없이 종묘생산업을 한 자(50만 원)
 -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종묘를 생산한 업자 (50만 원)
 - 품질표시의무자가 임산물품질표시의무를 위반

한 자 (50만 원)

–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서 불을 놓은 자(30만 원
과태료)

(2) 과태료 조정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0만 원이하 과태료 (§125
②)

– 휴양림(수목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위반자

– 채종림(천연보호림) 보호관리 명령위반자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25 ③)

– 품질표시 비의무자가 품질표시를 허위로 한 자
(신설)

–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200만
원)

○ 30만 원 이하 과태료 (§125 ④)

– 임산물취급영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재하지 않
은 자

–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자(신설)

– 화기(인화물질)를 소지 입산한 자(10만 원)

– 산불예방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 20만 원 이하 과태료 (§125)

– 종묘생산업자가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10
만 원)

– 입산통제구역 표식을 오손한 자(5만 원)

– 신고없이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한 자(5만 원)

– 신고없이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지은 자(10만
원)

<임업진흥촉진법 제정>

◎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 1960년대 이후의 치산녹화를 중심으로 한 보호
위주의 산림법으로는 임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
으므로, 따로 법률을 제정하여 임업의 구조개선, 임
산물소득원의 개발 및 임산물유통·가공업의 지원
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을 증진시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 제정된 법률의 주요골자는

○ 사유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
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업경영·대리
경영, 겸업임업·전업임업·기업임업 등 임업경영
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제7조)

○ 임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구조 및 유통구조 등 임업
의 구조개선 및 임산물가공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
립·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
도록 했다. (제11조 제1항)

○ 산림청장은 지역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임업
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
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독립가로 육성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3
조)

○ 산림청장은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생산기
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
에 대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여 지역
임업의 진흥을 촉진하도록 했다. (제15조 내지 제17
조)

○ 임업구조개선재원 등 임업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임업진흥기금을 설치하되, 산림법의
산림개발기금을 폐지하여 이 법에 흡수·통합하도
록 했다. (제18조 및 부칙 제5조)

○ 특히 임업구조개선·임산물가공업지원 등을 강
화함으로써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톨별회계내에 임업진흥사업
계정을 신설했으며, 이 계정의 세입은 산림전용부담
금과 수입임산물관세액 전액의 상당액을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한 전입금으로 하도록 했다.